生活騷音의 規制 必要性과 그 方向

具 然 昌
〈慶熙大 法大學長 · 法博〉

騷音이란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不快한 音을 말하며, 본래 主觀的인 것이다. 그러나 會話를 방해하고 作業能率을 저하시키는 등 社會生活을 저해하는 音이라든지 多數人에게 聽力低下, 耳鳴, 頭痛, 精神的 不安, 不眠등의 현상을 일으키는 音은 主觀的 段階를 떠나서 社會的으로 規制하여야 할 騷音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公害防止法에서는 물론 1977년 制定된 環境保全法에서 振動과 함께 騷音을 規制하고 있다. 그러나 環境保全法 에서는 본래 排出施設과 自動車로 부터 생기는 騷音만을 그 規制對象으로 하였고 航空機騷音이나 生活騷音은 그 規制對象으로 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音曲, 樂器, 라디오등에 의한 騷音은 輕犯罪處罰法에서 輕犯罪로서 처벌할 수 있었고, 擴聲裝置에 의한 騷音은 國民投票法 및 國會議員選擧法에서 規制하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生活水準 내지는 文化水準의 向上에 따라 피아노, 전축, TV등의 보급이 急增하게 됨에 따라 이에 比例하여 家庭生活의 靜謐을 侵害하는 정도도 현저해졌다. 뿐만 아니라 營業手段의 開發의 하나로서 종래 肉聲에 의존했었던 移動小商人들이 擴聲器를 이용함으로써 특히 住居地域의 靜穩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까지 侵害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된 것이 요즈음의 실정인 것같다. 과일, 채소, 생선, 소금장수가 1톤짜리 小型트럭에 商品을 싣고서 擴聲器를 이용하여 손님을 부르는 것이 최근에 지극히 보편화되고 있다. 심지어는 독장수나 各種器機修繕까지도 擴聲器를 이용하기도 한다.

生活의 近代化 · 機械化傾向에 따라 이들 小商人들이 擴聲器와 트럭을 이용함으로써 營業의 效率性을 높혀 收入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은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또한 家庭主婦들도 쉽게 알아들어 市場에까지 갈 필요없이 싸고도

싱싱한 채소나 생선을 살 수 있게 됨으로써 적잖은 便益을 주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러한 收益과 便益의 增加 이상으로 生活騷音을 急增시켜 주고, 아침부터 짜증스런 시간을 가져다 주는 사실을 看過할 수 없을 것 같다. 지난날의 人間味가 담겨진, 때로는 구수하고 때로는 구성진 肉聲이 그리워 지기까지 할 때가 적지 않다. 때로 녹음기까지 동원한 트럭을 만날 때엔 生活의 機械化의 利用이 濫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騷音을 防止하기 위해 이들 小商人들의 擴聲器 使用을 전면적으로 禁止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문제는 10여년전 敎會의 차임벨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서로 자랑이나 하듯이 敎會마다 차임벨을 설치하여 그 누구에게도 이익을 줌이 없이 한 밤중 요란하게 울려대어 市民들의 단잠을 깨우곤 했었던 일이 생각난다. 이것은 맹렬한 비난의 표적이 되었고, 급기야는 全面禁止措置가 내려졌던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생선·채소장수들의 擴聲器 使用禁止는 자칫하면 그들의 生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지 않다. 生活의 기계화물결에 따라 보편화된 사실을 一擧에 禁止시킴에는 문제가 있다. 騷音規制를 통한 住民生活의 靜穩保護와 小商人들의 生業保護 사이에 적정한 均衡을 유지할 수 있는 對策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輕犯罪處罰法에서는 함부로 音曲, 樂器, 라디오등의 음향을 지나치게 내어 인근의 靜謐을 害한 者를 輕犯罪로서 處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生活 및 文化水準의 向上에 상응한 적정한 處罰基準을 정할 수 없어 자칫하면 主觀的인 法의 施行을 가져올 우려가 없지 않아 效率的인 生活騷音의 規制가 지극히 어렵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環境廳은 生活器機의 발달과 그 광범위한 普及에서 비롯되는 住居生活의 靜穩을 보호할 必要性을 切感하고서, 1981년의 環境保全法改正에 즈음하여 生活騷音의 規制를 위하여 제32조의 2를 新設하였다. 이에 의하면 環境廳長은 住居生活의 靜穩을 보호하기 위하여 深夜에 있어서의 騷音이나 擴聲器등에 의한 騷音에 관한 生活騷音規制基準을 정하여 騷音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生活騷音規制基準의 적용지역은 住居專用地域, 住居地域 및 準住居地域등으로 되어 있으며 基準의 설정대상은 擴聲器에 의한 騷音, 工場·作業場의 作業騷音 및 그 이외의 深夜의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騷音이다. 뿐만 아니라 위의 生活騷音規制基準을 위반한 者에게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合理的이면서도 强力한 生活騷音의 規制對策을 마련한 바 있다.

擴聲器에 의한 소음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小商人들의 생활터전을 빼앗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기에 신중을 기할 일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生活騷音을 規制하여 住居生活의 靜穩을 保護할 수 있는 方案을 政府는 이미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環境問題와 관련하여서 꼭 같이 指摘되고 있는 바와 같이 法의 制定과 法의 施行間에 현저한 間隔의 存在는 生活騷音의 規制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大氣汚染이나 水質汚染에 비하여 騷音에 관하여는 政府나 市民이 비교적 寬大한 態度를 취해 온 느낌이 없지 않다. 1977년 制定의 環境保全法에서 이미 채택된 바 있는 騷音規制地域制나 그 地域에 적용될 騷音規制基準制가 아직도 實施조차 되지 않고 있음은 이러한 態度를 立證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하물며 조금만 참으면 될 生活騷音을 規制한다는 것은 좀더 미루어도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生活騷音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精神的 侵害를 결코 無視하거나 看過해서는 아니된다. 靜穩에 대한 權利는 憲法 제33조에서 憲法的 保障을 받고 있는 國民의 基本權의 하나인 環境權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이며, 國家나 國民은 이의 保護를 위하여 다함께 努力할 義務가 지워져 있다. 따라서 政府는 國民의 住居生活의 靜穩을 보호하기 위해 生活騷音의 規制對策을 施行할 것을 促求하지 않을 수 없다.

環境對策의 實施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할 것인가 혹은 아니할 것인가"의 兩者擇一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어떤 것을, 언제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느만큼 規制할 것인가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原則은 生活騷音의 規制에 있어서도 그대로 妥當하게 된다. 따라서 現時點에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는 生活騷音의 規制對策에 관하여 몇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우선 時急한 것은 적어도 大都市에 있어 生活騷音規制基準을 設定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生活騷音의 規制가 一部市民의 生計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기준이 마련될 것이 配慮되어야 할 것이다.

生活騷音의 規制에 있어 중요한 것은 時間的 制限이다. 音曲, 樂器, 라디오, TV 그리고 擴聲器 모두에 있어 인근의 住民生活에 다소라도 장해를 주는 것은 이른 새벽 또는 늦은 밤에는 禁止되어야 할 것이다.

擴聲器에 의한, 小商人들에 의한 呼客의 制限에 있어 참고할 슬기로운 方案이 하나 있다. 이미 市民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인데, 이른 아침 「고향의 봄」이라는 애창곡이 실로폰으로 녹음된 것이 들려오곤 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糞尿收去車가 收去希望者를 찾는 노래인 것이다. 이것은 가장 拒否反應을 적게 일으키는 것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方法을 다른 擴聲器使用의 小商人에게 적용해 봄이 바람직하다. 채소, 과일, 소금, 생선, 건어물등의 品目別로 즐겨 부르는 愛唱曲을 지정, 녹음케 하여 이것을 각각 들려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볼륨을 어느 限度로 제한하도록 한다면 現時點에 있어서의 상황하에서는 擴聲器使用에서 오는 騷音規制와 小商人들의 生業保護間 가장 적절한 調和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람에 따른 음성, 억양에서 오는 역겨움과 짜증스러움을 크게 줄 것으로 본다.

특히 또 한가지 配慮할 것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의 建築에 있어 層間, 그리고 이웃單位間 騷音을 低減시킬 수 있는 施工, 또는 資材使用을 강제하는 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웃간의 音曲, 樂器, 라디오, TV등에 의한 生活防害는 기본적으로는 入住者들의 良識에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良識에 따른 注意에도 불구하고 建築上 度外視된 騷音傳達防止의 施工으로 인한 生活騷音으로 被害가 너무나 현저한 것이 현 실정인듯 하다. 이 점에 관하여는 環境廳 單獨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建設部當局이 적극적으로 協力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環境保全을 위한 關係機關의 協調要請에 관한 環境保全法 제60조의 2에서 이 점을 전혀 看過한 것은 立法의 不備이다. 環境保全法施行令의 改正을 통하여 이 점을 補完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현저하게 環境保全法을 違反한 排出業所에 대하여 環境廳當局이 취한 告發, 改善命令, 操業停止命令 및 警告등의 措置는 環境廳當局이 우리나라의 政治的·經濟的·社會的인 어려운 現狀況下에서도 漸進的이면서도 積極的인 環境對策을 施行하려는 努力의 한 斷面으로 評價될 수 있다.

따라서 生活騷音의 規制에 대하여도 漸進的인 施策을 實施해 줄 것을 環境廳當局에 기대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